

# 서울시보

Hi Seoul  
SOUL OF ASIA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3016호 2010. 12. 22.(수)



※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한강 해넘이

기관의 장		공 람									
선 람											



발행인 |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| 시민소통기획관  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☎731-6818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조 례]

제5058호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2

**자 치 법 규**

**[조 례]**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5058호

**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 
2010년 12월 22일

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조,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형유통기업”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·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.
2. “중소유통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.
3. “소상공인”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상생협력”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제5호의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형유통기업 등”이라 한다)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·자금·구매·판로·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.
5. “준대규모점포”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.
6. “지역상권”이란 서울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, 판매, 교환,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.

**제3조(상생협력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(이하 “상생협력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
- 2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
- 3.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- 5.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.

**제4조(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1.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

**제5조(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)**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- 1.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, 시기, 규모 등에 관한 사항
- 3.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
- 4.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
- 5.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
- 6.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

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6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**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- 4.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대·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
- 6.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,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
- 7. 유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

- 가.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- 나.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- 다.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환경분쟁조정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- 라.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- 8. 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등의 개설계획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시장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의회의 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업 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3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재 대형유통기업 대표
4. 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
5.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·재래시장 대표
6. 시 소재 소비자단체·시민단체 대표
7. 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

- 8.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,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**제8조(협의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
3. 심의안건과 심의·결정내용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·날인

-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1. 제안이유  
최근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서울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2. 주요내용
  - 가. 기업형 슈퍼마켓(SSM)을 ‘준대규모점포’로 정의(안 제2조 제5호)
  - 나.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‘SSM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’는 규정 신설 (안 제3조 제3항)
  - 다. 시장이 대기업에게 지역사회 공헌, SSM 입점사건예고 등에 대하여 ‘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(제5조 제1항),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’ 규정 신설(제5조 제2항)

